

석면 위험성 Q&A

Q1. 한번만 노출되어도 석면질환에 걸릴 수 있다?

- 짧은 시간 동안에 수백억 개의 섬유를 들이 마시는 경우가 아니면 단한번의 노출로 석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미 사용된 석면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석면 섬유를 대량 흡입할 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Q2. 석면이 사용된 건물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 석면은 공기 중으로 날려 사람이 다량 흡입을 할 위험성이 없다면 즉각 철거하지는 않아도 된다. 철거 행위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정부에 등록된 석면 전문 철거업체에 맡겨야 한다.

Q3. 석면이 아주 위험한 것은 아니다?

- 석면 섬유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맛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인지하기 어렵다. 또한 석면은 그 피해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긴 잠복기를 거친 뒤 나타난다. 게다가 석면질환은 대부분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불치병에 가깝기 때문에 석면의 위험성은 과소평가해선 안 되며,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Q4. 기준치 이하로 노출되면 안전하다?

- 석면해체작업장의 석면 농도 기준치는 0.01개/㎤이다. 이 기준치 이하로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 석면 질환에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석면에 적은 양이라도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석면의 대처사항

1. 집 근처에 석면광산이 있을 때

- 우선 석면광산에 가까이 가지 않아야 한다. 석면이 있는 지역에 들어간 경우에는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이나 옷을 깨끗이 잘 털어준다. 만약 석면이 있는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공사 기간 동안에는 창문과 문을 닫아 집 안에 먼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만약 먼지가 들어왔다면 젖은 걸레로 먼지를 닦아내고 이불을 세탁한다. 일반 가정용 청소기를 사용하면 자칫 집 전체로 석면가루를 분산시킬 수 있으니 유의한다.

2. 건물에 석면이 사용됐는지 궁금할 때

- 건물에 석면이 사용되었는지 의심된다면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에서 석면조사 의무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석면조사 의무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자재의 석면함유 여부에 대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맡겨야 한다. 만약 석면건물일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파악하고 어디에 석면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아두어 혹시 있을지 모를 석면노출에 대비한다. 자녀가 석면함유자재가 쓰인 학교나 유치원 등에 다니는 경우는 석면자재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한다.

3. 석면이 사용된 건물을 수리하거나 철거할 때

- 석면이 사용된 건물을 수리 또는 철거하려고 할 경우 창문, 벽, 바닥 등은 비닐로 덮는다. 석면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집진장치를 미리 가동한다. 작업자는 작업복, 마스크,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석면이 사용된 건물을 수리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부서지지 않도록 작업한다. 또한 작업 중에 습윤제를 사용하여 석면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한다. 작업 후에는 바닥을 깨끗이 청소한다. 제거한 석면이 함유된 자재는 잘 밀봉하여 가까운 폐기물 처리업체로 보낸다. 만약 건물에 사용된 석면의 양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된 석면 전문 해체·제거업체에 맡겨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

4. 석면 철거 현장을 발견했을 때

- 석면 철거 작업이 있을 경우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석면 함유 자재를 마구 철거할 경우에는 시·군·구청이나 노동부 근로 감독관 등에게 즉각 신청한다. 석면 철거 작업 후 주변에 슬레이트와 같은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방치돼 있을 경우 즉각 관계 당국에 신고해 곧바로 안전하게 폐기처분될 수 있도록 한다.

5. 석면가루를 들이마시게 되었을 때

- 석면 철거 현장과 같은 곳에서 석면가루를 흡입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우선 오염되지 않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 만약 호흡을 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하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눈이나 피부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오염된 의복과 신발을 벗고 즉시 15분 이상 비누와 물로 씻어내고 필요 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오염된 의복과 신발은 재사용하기 전에 철저히 세탁해야 한다. 석면에 노출된 사람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한, 폐렴과 독감 예방접종을 받아 폐질환이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6. 석면으로 인해 병에 걸렸을 때

-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여 석면질병에 걸린 경우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석면 피해 의심자는 석면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우선 숙면 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진찰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석면 피해 검진 의료기관은 석면피해 구제 정보시스템(<http://www.ad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관할 시·군·구청에 석면 피해 검진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자료와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보통 석면 피해 인정 신청 후 60일 이내에 석면 피해 인정여부와 피해 등급이 결정된다. 석면 피해 인정을 받게 되면 피해 인정을 위해 받았던 진찰·검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석면에 대한 정보

환경부에서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을 통해 석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등 석면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석면피해구제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자료는 석면피해구제정보시스템(<http://www.adrc.or.kr>)을 통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구제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자료 : 환경부 「석면, 알면 대비할 수 있어요」